

## 제82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5월 22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5월 22일 하오 4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김성균 의원

지참의원 정응표, 김상대, 천철수, 김남진, 김창희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 일정

가. 보고사항

(1)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보광동 주민)

(2) 각 상임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나. 부의안건

(1)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제 4회)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제 1회)

(3) 목포시의회 의원비용 변상 조례 개정안

(4)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 보선 및 선거의 건

8. 토의 사항

◇박 찬 대 서기

- 제 81회 제 2차 회의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자 집행부 측에서는 즉시 의장에게 긴급 회의 소집 요구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 조양순 의원 외 5의원으로 부터 소집 요구가 왔음으로 즉시 각하 시켰습니다. 그리고 81회 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을 재 상정 시켰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삼 성 의장

- 각 상임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10분간 휴회 선언.

◇김 삼 성 의장

- 회의 속개 선언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보광동 주민으로부터)

◇박 찬 대 서기

- 낭독

◇김 삼 성 의장

- 해당 분과 위원회 회부 선언

※각 상임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내무위원장 종합심의)

◇김 일 섭 의원 보고

1. 향동, 해안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를 조속한 시일 내 처결 할 것을 조건부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문북만씨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는 6.25 동란전의 사건으로써 상대방의 관계자가 산재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방 측의 말만을 듣고 처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되어 양편을 상세히 조사 후 결의하기로 보류하여 두었습니다.
3. 부의안건인 일반회계 추경, 공전 추경, 조례 개정 안 등 3건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단기 4291년도 제 4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단기 4291년도 제 1회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목포시의회 의원비용 변상조례 개정안

◇김 일 섭 의원

- 3건 공히 각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심심한 검토를 필한 안건이오니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 일 섭 의원

- 상정된 의안 중 3건은 처결되었으나 교육 위원 선거만은 정족수 미달로 실시 불능이오니 상오 12시 정각까지 후회할 것을 동의.

◇조 양 순 의원

- 김일섭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휴회 시간 중 집행부 측에서 불참의원의 출석 권장을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명 5월 23일로써 만료된 5명의 위원선거와 1명의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전 시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교육 제도의 근원인 교육법 개정안도 3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4대 국회에서는 개정되리라고 믿어지는 바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는 교육을 위한 교육적인 면에서 사계에 권위 있는 인사를 선출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작일의 성원미달 유회와 금일의 선거 정족수미달로 인한 선거불능 등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국가에서 공고한 5월 21일의 법정선거일을 성원미달로 유회 시키고 5월 22일인 금일에도 정족수 미달로 선거불능이라 함은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마비상태에 방치시키는 책임을 우리 의회가 부하 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로 보아 김일섭 의원 동의의 12시까지의 휴회동의를 법정 회의시간인 하오 4시까지로 연장하여 전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찬성 발언.

동의 집 김경인 의원 발언 수락.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 삼 성 의장

- 회의 중지 선언. 상오 11시 5분 현재

정응표, 김상대, 천철수, 김창희, 김남진 의원 참석. (재석 15명 하오 2시 54분)

◇김 삼 성 의장

- 회의 속개 선언. 하오 2시 55분 현재

◇김 삼 성 의장

- 목포시 교육 위원회 위원 보선 및 선거의 건을 상정 선포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선거에 임하기 전에 사전 모든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토의한 연 후 실시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정 응 표 의원

- 인사를 선출하여 법에 규정된 각 선거구별로 적의 배당시킨 예가 있었다. 현재의 교육 위원 중 안홍성씨는 선출 당시 유달교 학구에 거주하였으나 가 사형편으로 북교교 학구로 주소를 옮긴 것 같은데 이러한 예의 재적위원과 선출 될 위원의 학구별 소속한계를 결정지은 연후 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 영 락 의원

- 교육법에 선거구를 명문화시킨 것은 위원 후보자의 당선 목적을 주관으로 하는 학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정 의원의 발언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나 강영락 의원의 발언과 같이 선거의 기본 모범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여히 교육 위원선거의 절차의 편의상 선거구를 명문화시킨 것은 가령 온금동 거주민이 산정 교 학구의 교육위원회에 피선되더라도 그 학교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보아질 적에 금 반의 본 선거는 학구별 거주소의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진다.

◇강 영 락 의원

- 개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2인을 선출하되 그 인선은 의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김 삼 성 의장

- 감표위원으로 명남철, 강영락 의원을 지명

◇김 삼 성 의장

- 보궐선거를 1차로, 2차에 임기만료 된 위원의 후임 선거 순으로 투표할 것을 선언.

- 제 1선거구 보궐선거 개표결과

제 1차 투표 - 김종식 8표, 임기열 3표, 장봉환 1표, 기권 3표

◇김 삼 성 의장

- 재석 의원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음으로 제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언.

- 제 2차 투표 - 장봉환 2표, 김종식 8표, 임기열 5표

◇김 삼 성 의장

- 제 2차 투표 역시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음으로 결선 투표로 들어갈 것을

선언.

- 결선 투표 - 김종식 9표, 임기열 6표

◇김 삼 성 의장

- 제 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김종식씨가 9표로 당선되었음을 선언.
- 임기만료로 인한 각 선거구 후임 위원 선거 개표결과

제 1차 투표

제1선거구: 이승원 4표, 문용한 6표, 장봉환 3표, 기권 2표

제2선거구: 장봉환 4표, 김용진 7표, 이우양 1표, 최향춘 1표, 기권2표

제3선거구: 최향춘 3표, 이복동 9표, 이승원 1표, 기권 1표

제4선거구: 김익봉 12표, 이무양 1표, 이승원 1표, 기권 1표

제5선거구: 이우양 7표, 이승원 5표, 지홍렬 2표, 기권 1표

◇김 삼 성 의장

- 제 1차 투표에서는 제 4선거구에서 김익봉씨가 당선되었음을 선언.

제 2차 투표 - 제1선거구: 문용한 8표, 김병호 1표, 장봉환 2표, 이승원 4표

제2선거구: 김용진 9표, 장봉환 5표, 최향춘 1표,

제3선거구: 이복동 10표, 최향춘 4표, 이우양 1표

제5선거구: 이승원 8표, 이우양 6표, 지홍열 1표

◇김 삼 성 의장

- 제 2차 투표에서는 제 3선거구 이복동씨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고 제 1, 2, 5, 선거구는 다점자 순으로 2인을 선정 결선투표 실시를 선언.

- 결선 투표 - 제1선거구: 이승원 3표, 문용한 11표, 기권 1표

제2선거구: 장봉환 5표, 김용진 9표, 기권 1표

제5선거구: 이우양 4표 이승원 11표

◇김 삼 성 의장

- 제 1선거구에서 문용한씨, 제 2선거구에서 김용진씨 제 5선거구에서 이승원씨가 각 각 당선되었음을 선포.

◇김 삼 성 의장

- 폐회 선언. 하오 4시 2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 함

단기 4291년 5월 24일

시의원 김성균

시의원 김경인

작성자 서기 주도식